

#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 (안)

의안 번호	4 8 6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6. 10

발 의 자 : 이상근의원 외 5인

## 1. 제안이유

- 고성군의회사무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 하므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전문위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을 삽입. (안 제3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경상남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 제5조제3항 적용

##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 (안)

고성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 (사무분장) ②전문위원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자치법규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검토
2. 각종 의안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3. 청원, 진정의 조사연구 및 처리안 작성
4.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
5. 소관위원회 원외 활동계획수립 및 현장확인활동 지원
6. 소관위원회 의사진행 보좌

제4조 (전문위원) 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